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252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주 문

- 피고들은 소외 D와 2023. 3. 7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, 2023. 3. 20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, 각 체결한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244,708,8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,708,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가.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)

판사 김용찬

별지